의안 번호

2016

월명에 중 전통 장 및 생점가 청년이 워 · 지원 재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1. 10.(목) 이명녀 의원 외 9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1. 10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12. 6.(화)

2. 제안이유

○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라. 청년상인 사업,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(안 제5조~제6조)
- 마. 업무의 위탁(안 제7조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6조
- 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6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을 대상 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하고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- 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.
 - 1.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
 - 2. 창업을 위한 교육·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
 - 3. 창업 성공사례 발굴 · 포상 및 홍보
 - 4.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"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·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사람을 말한다.